

종 법(宗法)

중앙전문위원회법

제1조 종헌 제97조에 의거 중앙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제3조 중앙전문위원회 위원 자격은 전문적인 학식을 겸비하여야 한다.

제4조 중앙각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원장 제청으로 종정이 임명한다.

제5조 각위원회 위원 정수는 10명으로 한다.

제6조 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각 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제임명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종정은 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임기중이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종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각위원회 위원은 종단 각급 기관의 겸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